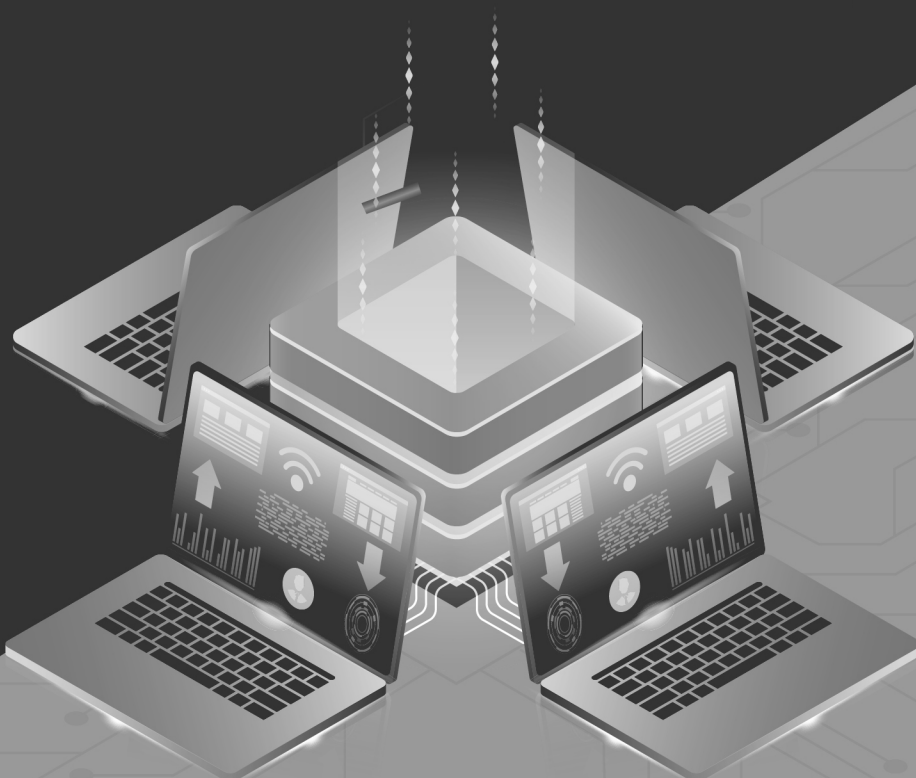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I. 개정 내용	5
1. 개 요	7
2. 주요내용	7
II.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11
1. 개 요	13
2. 주요내용	15
3. 업무처리 흐름도	22
[붙임1] 각종 서류 양식	25
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해임신고서	27
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9
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31
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32
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 해임신고대장	33
[붙임2] 질의응답(FAQ)	35

Ⅰ . 개정 내용

I 개정 내용

1 개 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유지보수·관리자 배치, 신고내용, 방법, 절차 및 각종서식 등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7.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52호, 2025.7.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제37조의2)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필요한 유지보수·관리 기준 마련 근거 명시 (제1항) (유지보수·관리기준은 고시로 마련)
-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제2항)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3)

-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 (제1항)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 위임)
-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의무 및 대행 근거 (제2항) (대행하는자는 시행령 위임)
- 관리주체의 점검기록 보존 의무 및 제출 의무 (제3항) (보존기간은 시행령 위임)

- ☐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제37조의4)
 - 유지보수등의 업무 공사업자 위탁 근거 (제1항)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근거 (제2항) (선임기준은 시행규칙 위임)
 - 선임 또는 해임 시 지자체장 신고 의무 (제3항) (신고 절차 등은 시행규칙 위임)
 - 지자체장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의무 (제4항) (발급 절차 등은 시행규칙 위임)
 - 해임 시 30일 이내 새로 선임 (제5항)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 등 (제6항) (세부내용은 시행령 위임)
- ☐ **과태료 부과근거** (제78조 제1항 제6의2호 ~ 제6의6호)
- ☐ **시행일** ([부칙] 제3조)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제37조의2)
 -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등 (제1항)
 -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는 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제2항)
 -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 (제3항)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
 -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
- ☐ **과태료 세부내용** ([별표 10] 제8호 ~ 제14호)
- ☐ **시행일 및 특례** ([부칙] 제1조 ~ 제2조)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

-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내용(대상설비, 방법, 주기 등) 명시 (제1항)
-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자체, 관련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 명시 (제2항)
-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연구의뢰 권한 명시 (제3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제9조)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은 [별표]에 규정하도록 명시 (제1항)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자 (신축, 증축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제2항)
-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 명시 (제3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0조)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 및 서류 (30일 이내) (제1항)
- 변경 신고 의무 항목 (법인 명칭, 성명, 주소 등) (제2항)
- 변경 신고 절차 및 서류 (30일 이내) (제3항)
- 지자체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제4항)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및 지자체장의 발급 의무 (제5항)
- 지자체장의 선임·해임 신고대장 기록 의무 (제6항)

□ 각종서식(별지 제10호~제14호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등

□ 시행일 ([부칙])

- ☐ 고시 목적 (제1조)
- ☐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
- ☐ 고시의 적용범위 (제3조)
-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제5조)
- ☐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제6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제7조)
- ☐ 유지보수·관리 (제8조)
-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제9조)
- ☐ 성능점검 (제10조)
- ☐ 성능점검 대행 (제11조)
-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제12조)
- ☐ 재검토기한 (제13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별표 1])
- ☐ 성능점검 검토사항 ([별표 2])
- ☐ 대가산정 기준 ([별표 3, 4])
- ☐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 ☐ 시행일 ([부칙])

II.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1

개 요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나

용어의 정의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器具), 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관리주체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성능점검 대행자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2 주요내용

가 대상 건축물 (영 제37조의2)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후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행령 부칙 제2조)

- (제도시행 유예기간)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유예기간
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u>2025. 7. 18.</u>
②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u>2026. 7. 18.</u>
③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u>2027. 7. 18.</u>

다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고시 제8조 ~ 제11조)

구 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라**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제37조의3)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마**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고시 제12조 및 [별표4])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영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	선임일 전	20시간

※ 교육기관 : ICT폴리텍대학

바**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시행규칙 [별표])

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사**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 분	선임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아**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차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태료) (영 [별표10] 제8호 ~ 제14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타

대상 정보통신설비 (고시 제7조 및 [별표1])

구 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파

대가산정 기준 (고시 [별표3])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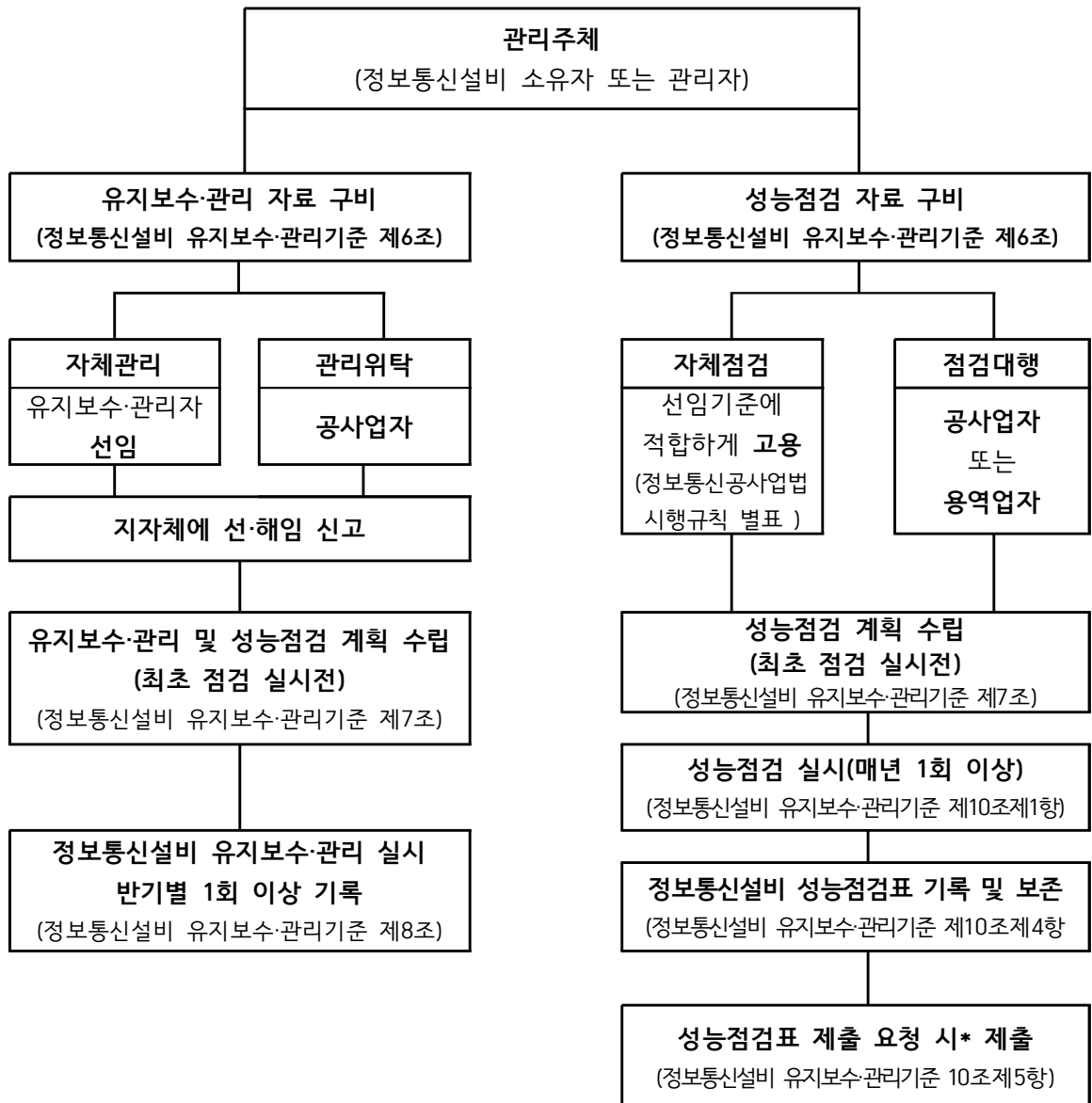
직접인건비(설비수량 × 기준인원 × 조정계수 × 노임단가)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인 인 인 인				
2) 직접경비 - 여비 - 차량운행비 - 현장소요경비 등	식 식 식				
3) 제경비 (1의 110~120%)	식				
4) 기술료 ((1+3)의 20~40%)	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	식				
합 계					

- 직접인건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표 1의 기준인원, 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 시·군·구청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신 고 접 수 신고서류 확인 신고 결과 통보 기안 및 결재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붙임1] 각종 서류 양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m ²		용도
	주소				
선임 구분	[] 직접 선임				
	[] 위탁 수행		[] 중복 선임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선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급	해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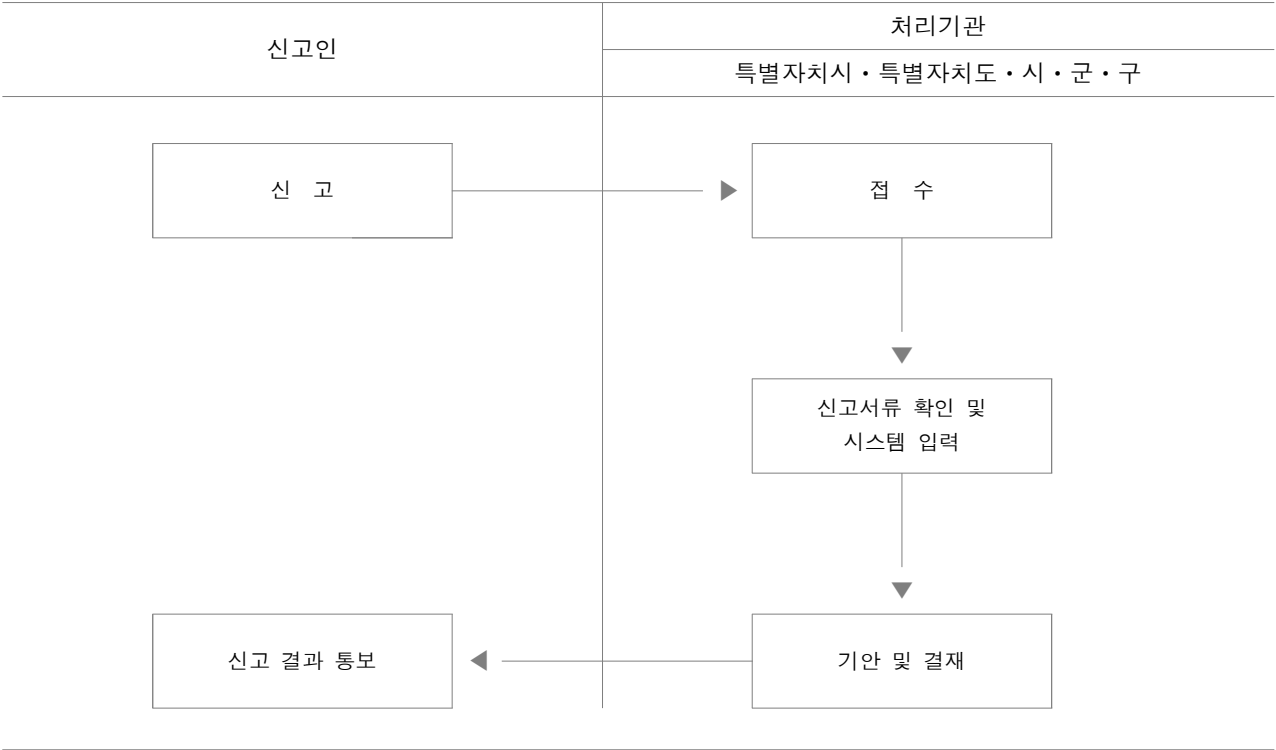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m ²		용도	
	주소				
선임 구분	[] 직접 선임				
	[] 위탁 수행		[] 중복 선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성명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작성 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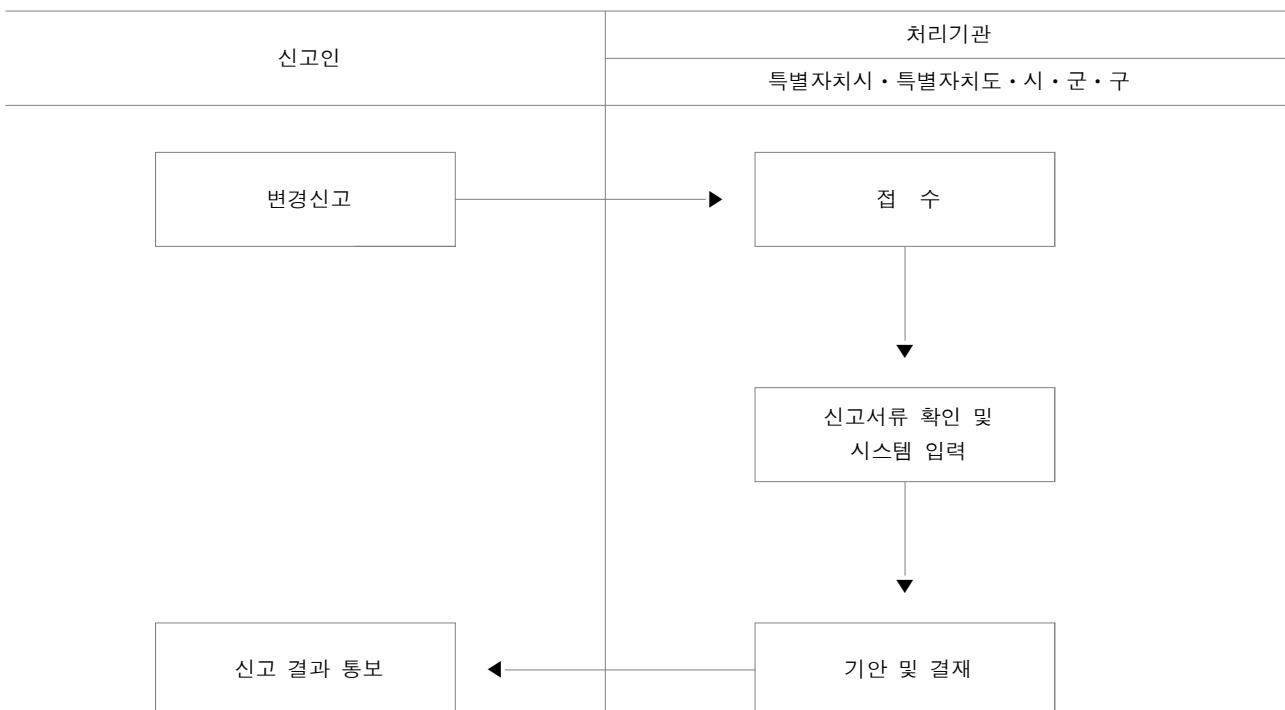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주소		m ²	
신청사유			신청부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번호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m ²	용도	
	주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등급	선임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직인

정호영 대표이사
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 해임신고대상[illegible]

[붙임2] 질의응답(FAQ)

질의응답 F A Q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을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현재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범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리주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로 사료됩니다.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와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라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특급)로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 인정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ICT폴리텍대학)에서 총 20시간 이상으로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초급~특급)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위탁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5.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업무 대행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별도의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방법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주체는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거나 위탁 계약(비상주선임)을 체결하는 등 건축물의 특성,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여부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34965호)제2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이 2만㎡에서 4만㎡로 증축되고 건축허가 등이 2025년 7월 18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면적 4만㎡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둘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 부지 내의 인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에는 연면적의 확인 방법, 근거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전 검사, 설계 및 감리제외 대상 공사의 범위 판단할 때 활용하는 **연면적 기준은 해당 건축물이 등재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로 증빙**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중복선임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은 최소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관리자 외의 추가 선임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관리자를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타업종 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건축물 내 다른 설비 관리자와의 겸직 금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설비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개별 법령에서 관련 자격, 등급, 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가 다른 설비의 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 기술자 상한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선임기준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별로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은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은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은 초급기술자 이상 1명을 의무 선임하도록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 기술자 수의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수량, 관리 중요성 등에 따라 판단하여 추가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위탁·대행 자격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의3 제2항에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는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업무 재위탁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다만, 관련 법령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대한 재위탁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상 이를 재위탁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시설관리업체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위탁 가능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성능점검은 정보통신용역업자 가능)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 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체에 직접 위탁하여야 하며,
- 건물관리를 별도로 위탁받은 시설관리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업체를 관리주체로 보아 유지보수 ·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유지보수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선·해임 신고 주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같은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더라도,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6.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의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제출, 보존은 의무이나, 해당 점검 기록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규격 등이 상이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현황표 작성요령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및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현황표를 각각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규격 등이 동일한 정보통신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 각각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 제2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등을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유지보수·관리)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10조(성능점검)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기준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제3항에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등급별(초·중·고·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식)별 투입인원 및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과태료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및 신고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관리자 선임에 드는 비용과 과태료 처분 금액만을 단순 비교하여 과태료 처분을 의도하는 등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관련 법령에는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기한을 각각 30일로 규정) 선임 및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임 및 신고 의무 이행 시 까지 반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응답 (Q&A)

질의응답 (Q&A)

1.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입법취지 및 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 등의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 김영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당시 **2022년 9월 26일에 발의**하였으며,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점검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고장·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된 개정 취지**로서,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을 안내드립니다.

2.

건축물 연면적별 시행시기 및 시행규칙·고시 제개정 여부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제2조에 규정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은 **2025. 7. 18일자로 개정 및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3.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성능 점검 기한은?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제2조에 규정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기존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반기 1회)은 2025.7.19.부터 2026.1.18.까지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점검(연 1회)은 2025.7.19.부터 2026.7.18.까지 1회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달 내 유지보수·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1.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위탁)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에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유지보수·관리)**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10조(성능점검)**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신축 준공예정인 건축물의 선임신고 기한 및 신고주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완공일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홈페이지)-정책·통계-정책정보-정보통신’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담당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참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기존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26.1.18.일까지 유예

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을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현재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범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

7.

정보통신설비가 없는 창고 등 건축물의 경우,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

- 건축물 준공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단일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일정 부지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 산정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 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가 유선 등 물리적으로 연결된 상태로서 관리자가 해당 설비의 점검 등의 업무 수행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일정 부지 내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유지보수 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일정 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25.7.19일부터 시행되는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장 이전으로 사업장 폐쇄 및 신축 준공 예정인 경우, 유지보수관리대상 여부 및 유예기간 별도 신청 가능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제2조에 따라 올해 시행 예정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2025년 7월 18일까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유지보수·관리 제외 대상에 공장 등록 취소 및 사업장 폐쇄 예정인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공장의 경우 타분야 관리자 배치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제1항에 따라 정보 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제7조 별표1에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치와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계점을 기준으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국선)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임대 여부 및 설비(시스템)별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유지보수관리 점검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설치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 비와 상기 분계점을 기준으로 이용자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을 사료됩니다.
 - 다만, 관리주체가 공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설비를 임대(설치, 관리, 보수 등)하여 건축물에 설치하고 사용하거나, 관리주체가 소유 및 운영하는 정보통신설비를 별도의 공사업자와 유지보수계약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제7조 별표1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및 이용자방송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상기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설치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기존 유지보수 공사업자 또는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연면적 산정시 창고, 지하층 등 포함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 측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내 지하층 및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된 창고 등은 연면적 산정시 합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군부대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비고 4.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조사·시험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 기술기준 적합성 조사·시험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3021호, 2025. 2. 25.) 등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시행 및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관리주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로 사료됩니다.

15.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공동소유인 경우 관리주체 범위

-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 준공 시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각 임차인의 개별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임차인이 관리주체로서 임차 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대상 건축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주가 관리주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소유주가 협의를 통해 특정 소유주 1인에게 관리주체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계열사 관계 등의 경우 건축물에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관리주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내에서 관리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와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라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특급)로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 인정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ICT폴리텍대학)에서 총 20시간 이상으로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초급~특급)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복합부지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들의 정보통신 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경우?

- 복합부지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들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의 각 관리주체가 동일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중복하여 개별 선임하거나, 각 관리주체간 협의를 통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위탁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업무 대행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별도의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관리단 등)는 관리자로 사료되나,
 -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는 자(사업자 등)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업무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선임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점검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직접 위탁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상 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외 타 법령에 따른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현 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관리주체로 보기 어려우며,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기안전관리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전기, 소방설비 관리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등록업체만이 위탁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방법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주체는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거나 위탁 계약(비상주선임)을 체결하는 등 건축물의 특성,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여부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34965호)제2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2만㎡에서 4만㎡로 증축되고 건축허가 등이 2025년 7월 18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면적 4만㎡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4.

둘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 부지 내의 인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에는 연면적의 확인 방법, 근거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전 검사, 설계 및 감리제외 대상 공사의 범위 판단할 때 활용하는 연면적 기준은 해당 건축물이 등재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로 증빙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중복선임 및 직접고용 가능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서는 건축물 연면적별 선임대상을 구분하여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그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상기 선임기준 및 자격조건 등에 적합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중복선임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은 최소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관리자 외의 추가 선임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관리자를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7.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 기술자 상한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선임기준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별로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은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은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은 초급기술자 이상 1명을 의무 선임하도록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 기술자 수의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수량, 관리 중요성 등에 따라 판단하여 추가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8.

타업종 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건축물 내 다른 설비 관리자와의 겸직 금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설비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개별 법령에서 관련 자격, 등급, 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가 다른 설비의 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위탁·대행 자격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의3 제2항에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는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재위탁 가능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다만, 관련 법령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대한 재위탁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상 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1.

시설관리업체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위탁 가능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성능점검은 정보통신용역업자 가능)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체에 직접 위탁하여야 하며,
 - 건물관리를 별도로 위탁받은 시설관리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업체를 관리주체로 보아 유지보수·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2.

유지보수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선·해임 신고 주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같은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더라도,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의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보존은 의무이나, 해당 점검기록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4.

규격 등이 상이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현황표 작성요령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및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현황표를 각각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규격 등이 동일한 정보통신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 각각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 제2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등을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유지보수·관리)**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10조(성능점검)**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기준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제3항에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등급별(초·중·고·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식)별 투입인원** 및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7.

유지보수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대가 기준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9조제3항에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위탁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

유지보수관리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의무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관리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해당 문제를 예방하고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및 신고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자 수급 가능 여부, 제도 시행이전 관련 업무 수행자 경력인정 여부 등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한 취지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의 경력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고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력 외의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제도 시행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자체에 선임 신고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후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사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능력과 현장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해 최대 특급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등을 지난 해 11월1일부터 시행하여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자 수급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였으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6의2호 내지 제6의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의2호 내지 제1의3호 등에서 유지보수관리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의무대상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 및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주체에게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법령 : 산업정책처 02-3488-6142 ~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원가제도처 02-3488-6152 ~4